#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36

발의연월일 : 2025. 4.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천호

최은석 · 강승규 · 김용태

김상훈 • 박준태 • 서명옥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 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 ⑦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u>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u>우</u>		
2. • 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